
**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
2020 년도 투명성 보고서**

2021. 1.

주식회사 선한미디어

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
제 64 조의 5(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)에 따라 정보통신
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
투명성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

2021 년 1 월 29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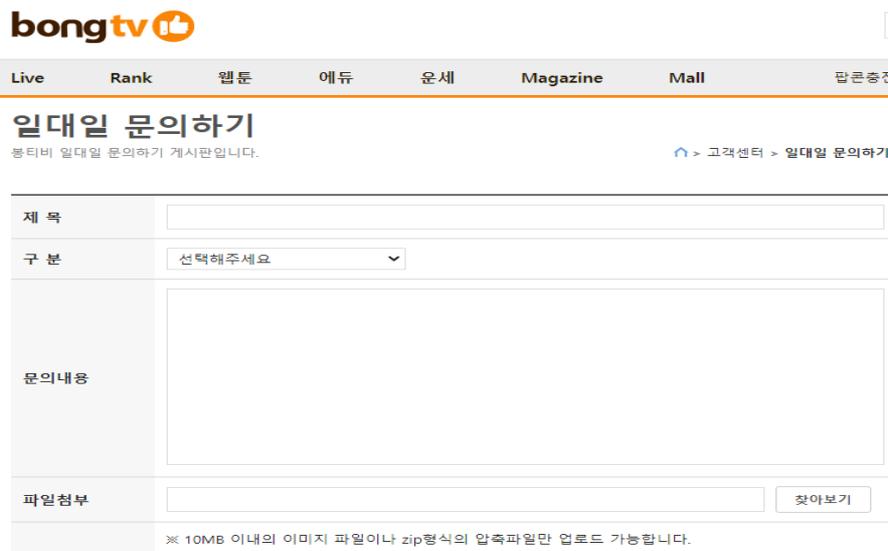
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에 관한 2020 년도 투명성보고서

1. 일반현황 ('20 년 12 월말 기준)

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	주식회사 선한미디어
대표자	우영미
정보통신 주요서비스 / 3 개월 일평균 이용자	인터넷방송(봉티비)/100 명이하
정보통신서비스부문 연평균 매출액	2020 년 약 10 억원
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	마케팅 부문 박지완 사장

2.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노력

-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신고기능 마련 (2020 년도)
- > 봉티비 (https://www.bongtv.kr/customer/video_report.asp) 운영



bongtv

Live Rank 웹툰 에듀 운세 Magazine Mail 팝콘중간

일대일 문의하기

봉티비 일대일 문의하기 게시판입니다. [고객센터 > 일대일 문의하기](#)

제목

구분

문의내용

파일첨부

※ 10MB 이내의 이미지 파일이나 zip형식의 압축파일만 업로드 가능합니다.

일대일 문의하기

- 청소년 유해물 표시 및 접근제한 실시 : 2020 ~ 현재

->봉티비 <https://www.bongtv.kr/mypage/namecert.asp> 내 성인인증요청





성인 인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.

본 정보내용은 '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포함 하고있어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
본 정보 내용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

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.

본인 인증 수단을 선택해주세요

휴대폰 인증

아이핀 인증

-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홍보실시 : 2020. 03 월

->봉티비 (https://www.bongtv.kr/customer/video_report.asp) 운영



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

> 고객센터 >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

불법촬영물등이란?

불법성 게시물의 일종으로, 특히 "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(약칭: 성폭력처벌법)"과 "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(약칭: 청소년성보호법)"에서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사진, 동영상 등의 게시물을 말합니다.

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0조 제 2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해당 페이지에서 "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·삭제요청서"를 다운로드 후 1:1문의하기에 첨부파일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불법촬영물
 -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
 - 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(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)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
- 허위영상물
 - ① 유통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·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·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·합성 또는 가공한 것
 - 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·합성 또는 가공할 당시에는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·영상물 또는 음성물
- 아동청소년 성적취급
 - 아동·청소년 또는 아동·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등 성적 행위(아동·청소년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·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도 포함)를 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

고객센터

- 공지사항 >
- 자주묻는 질문 >
- 일대일 문의하기 >
- 방송 민원 >
- 탈퇴 아이디 복구 >
- 제안하기 >
- 방송 및 장애신고 >
-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>

3. 불법촬영물 등의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

- 2020 년 1 년간 불법촬영물 신고접수 없음

불법촬영물 등 신고·삭제 요청 및 처리결과

※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5제2항에 따라 동시행령 [별지서식] 또는 서식상의 내용을 포함한 문서에 의하여 신고된 건을 대상으로 함
 ※ 대상기간 : '20.12.10. ~ 12.31.(신고접수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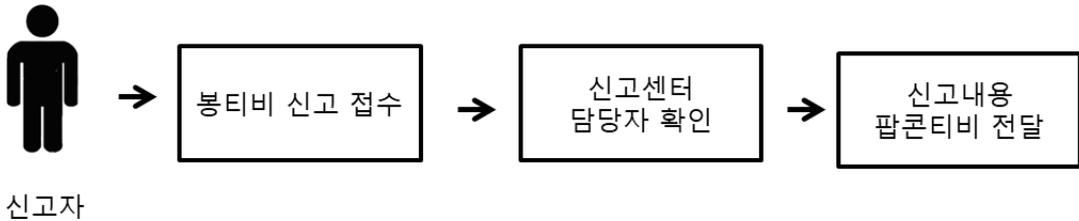
□ '20년 월별 불법촬영물등 신고·삭제요청 현황 및 처리결과

구분	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계	
신고 접수	신고·삭제 요청인	피해자 등	0	0	0	0	0	0	0	0	0	0	0	0	0
		기관·단체	0	0	0	0	0	0	0	0	0	0	0	0	0
		소계	0	0	0	0	0	0	0	0	0	0	0	0	0
	사유	불법촬영물	0	0	0	0	0	0	0	0	0	0	0	0	0
		허위영상물 등	0	0	0	0	0	0	0	0	0	0	0	0	0
		아동청소년성착취물	0	0	0	0	0	0	0	0	0	0	0	0	0
처리 결과	자체 삭제·접속차단	자체 삭제·접속차단	0	0	0	0	0	0	0	0	0	0	0	0	0
		해당없음	0	0	0	0	0	0	0	0	0	0	0	0	0
	방심위 심의요청	심의삭제·차단	0	0	0	0	0	0	0	0	0	0	0	0	0
		해당없음	0	0	0	0	0	0	0	0	0	0	0	0	0
		각하 등	0	0	0	0	0	0	0	0	0	0	0	0	0
	소계	0	0	0	0	0	0	0	0	0	0	0	0	0	0
	삭제·차단 사유	불법촬영물	0	0	0	0	0	0	0	0	0	0	0	0	0
		허위영상물 등	0	0	0	0	0	0	0	0	0	0	0	0	0
		아동청소년성착취물	0	0	0	0	0	0	0	0	0	0	0	0	0

※ 요청사유 및 삭제·차단 사유는 중복계상

4.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에 관한 절차

- 팝콘티비 (<https://www.popkontv.com>) : 더이앤엠 주식회사에서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,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더이앤엠에 메일로 전달 요청함.
- 현재 더이앤엠에서는 PC 웹, 모바일웹, 모바일앱 배너 영역에서 불법 촬영과 유포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고 있음.



5.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책임자

구 분	정	부
성 명	박지완	윤다영
부 서	마케팅부문	서비스운영팀
직 책	사장	과장
지정일	2021.1.25	2021.1.25

6.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교육

구분	교육일	교육명	참석자	시간	교육기관
교육실시	2021/1/21	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관련 개정된 시행령 및 제도 안내	유통방지 책임자	2시간	자체 교육

<끝>